

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

의안번호

170

제출년월일 : 1993. 3. 22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 안 이 유

1962년 건축법을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15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왔으나 경제, 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,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1992. 6. 1부터 개정 건축법,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제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며,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.

2. 주 요 골 자

- 가. 용도지역별로 사전결정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정하여 건축가능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관련법에 의한 9개 항목의 허가사항을 사전에 처리하여 시민편익을 도모코자 함.
- 나. 구청장이 건축지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허가에 관한 지식을 전달 기술지도,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건축행정 질서를 바로잡고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.
- 다. 위해시설, 교통유발시설, 다중집합시설,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용도, 규모에 따라 일정거리 이상을 띄워서 건축케 함.
- 라.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종전의 규정에 준하여 정하고 부분적으로 필수시설에 대하여 완화하며, 용도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, 건폐율, 대지안의 공지, 건축물의 높이,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을 규정함.
- 마. 대규모 판매시설, 업무시설, 관광숙박시설, 종교시설, 관람집회시설에 대하여는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보행자 등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 등을 설치케 하여 도심지내 보행자의 휴식공간 및 도심환경을 개선함.

3. 근 거 법 령

건축법, 건축법시행령, 건축법시행규칙